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.

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주택단지에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도입

- 1)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생하였음

- 2) 기존 주택단지에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

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6조)

나.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

- 1) 옥상 승강기탑,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,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해당하지 않아 설치에 제한이 발생
- 2)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,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(안 제119조제1항)

다. 건축협정구역 건폐율,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

- 1)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상 혼동 여지가 있어 법령정비 필요사항 개선 제안
- 2)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그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해석 상 혼란을 방지(안 제110조의7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기존 주택단지(「주택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“주택단지”를 말한 다)에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 면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: 법 제56 조에 따른 기준

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 중 “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77조”를 “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 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“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78조”를 “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 제85조”로 한다.

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중 “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”을 “승강기탑(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)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 탑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(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적용의 완화)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적용의 완화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기존 주택단지(「주택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“주택단지”를 말한다)에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: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
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, 제55조, 제56조,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: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	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

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3.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: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4. 5. (생략) ② ③ (생략) 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·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 1. ~ 4. (생략) 5. 건축물의 높이: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[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(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, 계단실, 승강기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)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	-----. --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-----. 3. -----. --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-----. 4. 5. (현행과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 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①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.
--	---

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]]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가.·나. (생략)

다.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)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.

라. (생략)

6. ~ 10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-----.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- 승강기탑(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)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

-----.

라. (현행과 같음)

6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82